

2020년 3월 24일 개정판

감사위원회 운영규정

LS 일렉트릭 주식회사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- ① 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②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가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.

제 2 장 구 성

제 3 조 (구성 및 임기)

-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한다.
- ②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, 그 임기가 최종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.
- ③ 감사위원회 위원은 연임될 수 있다.
- ④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

- ⑤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 542 조의 11 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.

제 4 조 (위원장)

- ①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.
- ②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회계 또는 재무와 관련된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, 이사회, 주주, 채권자, 규제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로 인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5 조 (해임 및 충원)

감사위원의 해임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으며, 주주총회는 해임, 임기만료 또는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감사위원회의 결원이 생길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충원하여야 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 6 조 (종류)

- ① 감사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- ② 정기회의는 연 4 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③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제 7 조 (소집권자)

- 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, 위원장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 4 조 제 3 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알리고 감사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감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8 조 (소집절차)

- ① 감사위원회 소집은 회의일자를 정하고 12 시간 전에 각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문서,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경우 제 1 항의 절차 없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9 조 (의사의 진행 및 결의방법)

- 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를 진행하고, 회의의 질서를 유지한다.
- ②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③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, 해임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- ⑤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⑥ 통신수단에 의한 결의에 관하여는 이사회 규정 제 12 조 제 2 항을 준용한다.

제 10 조 (부의사항)

감사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①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- ② 감사에 관한 사항
 - 1. 상법 제 412 조의 2 에 의한 이사의 보고에 따른 조치
 - 2.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0 조에 의한 외부감사인의 통보에 따른 조치
 - 3. 감사록의 작성
 - 4.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조사에 관한 사항
 - 5. 전문가의 자문에 관한 사항
- ③ 외부감사인 선임 및 변경, 해임
- ④ 감사보고서의 작성, 제출 및 주총에서의 의견 진술에 관한 사항
- 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 사항
- ⑥ 기타 법령에 정하거나 정관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 4 장 직무와 권한 및 의무

제 11 조 (직무와 권한)

-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, 이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-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 이사회 소집을 청구 할 수 있다.
- ③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해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- ④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임 및 변경, 해임할 권한을 가진다.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연속하는 때 3 개 사업년도의 외부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. 다만,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를 외부감사인으로 변경선임 또는 선정하거나, 이미 선정된 외부감사인이 감사년도 중 해산 등의 이유로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외부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, 예상감사시간, 징계 여부 등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.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별도의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와 선임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.

- ⑥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사항은 문서화하여야 하며, 선임 후에는 해당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하여 주주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⑦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외부감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할 수 있고, 최소 분기에 1 회 이상 만나서 감사 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해 논의한다.
- ⑧ 이사는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⑨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감사위원회는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⑩ 감사위원회는 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하고, 주주의 대표 소송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.
- ⑪ 감사위원회는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한다.
- ⑫ 위원회의 부의사항 중 위원회가 회사의 중요사항으로서 이사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를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.

제 12 조 (전문가의 조력)

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.

제 13 조 (의무)

- ① 감사위원회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.

- ②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주주총회에서 그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.
- ③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- ⑤ 감사위원회는 이사로부터 제출받은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,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관계법령상의 서류, 연결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감사방법의 개요
 - 2. 대차대조표(재무상태표) 및 손익계산서에 관한 사항
 - 3.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안)에 관한 사항
 - 4. 영업보고서에 관한 사항

제 5 장 기 타

제 14 조 (의사록)

- ① 감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.
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.

제 15 조 (이사회 보고)

감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①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- ②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
- ③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 사항

제 16 조 (중요 회의에의 출석)

- ① 감사위원은 경영방침의 결정 과정, 경영 및 업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임원회의 및 그 밖의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② 전항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위원은 심의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의사록 등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

제 17 조 (문서 등의 열람)

- ① 감사위원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문서를 적시에 열람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사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감사위원회는 중요한 기록, 그 밖에 중요정보의 정비, 보존 등의 관리상황을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 또는 직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18 조 (내부감사부서 및 내부감사 전담자)

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산하에 감사 업무 등을 수행할 시 이를 보좌하는 내부감사부서 또는 내부감사 전담자를 둘 수 있다.

제 19 조 (경비)

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.

제 20 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감사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21 조 (규정의 개폐)

- ①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.
- ②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, 이사회 규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3월 1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
(개정일) 이 규정은 2001년 7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(개정일) 이 규정은 2001년 12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(개정일) 이 규정은 2003년 2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(개정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(개정일)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(개정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